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3. 11.

박 정 환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설명서

제안자 : 박정환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 비용추계제도는 국회 및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와 일부분의 기초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제출하는 조례안에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작성 대상을 확대 추진하여 재정 부담 요인의 사전 점검 및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 달서구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제출하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 목적 규정과 제2조제1호 비용추계서의 정의 규정 및 제3조 작성대상 규정을 개정하여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며,
- 안 제3조제4항을 개정하고 제6조제2항을 신설하여, 주민 청구조례안에 대한 발의권과 비용추계 제출 사항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자 하며,
- 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과 달서구 의회의 현실에 맞는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로 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완결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 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8조, 제121조, 제148조 및 법제처 의견 12-0005 등을 검토하여 반영한 안건으로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으며, 달서구의회 위원회 및 의원이 발의·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해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조례와 예산이 연계되도록 하였으며, 작성주체를 명확히 하여 법과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공급받을 국민들을 위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으로

-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의원 대표 발의】

| | |
|----------|----------|
| 의안 번호 | 00923129 |
|----------|----------|

발의일자: 2023. 11. .

발 의 자: 박정환, 고명옥, 정순옥, 권숙자,
이진환, 김장관, 김정희, 이영빈,
서민우

1. 개정이유

-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구청장 발의 조례안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고 있으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 비용추계제도는 국회 및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와 일부분의 기초단체에서 구청장과 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제출하는 조례안에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작성 대상을 확대 추진하여 재정 부담 요인의 사전 점검 및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 달서구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제출하는 조례의 실효성을 강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확대 (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제3조)
-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발의권과 비용추계 제출 사항 정비 (안 제3조제4항 및 제6조제2항)
-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안 제6조)

3. 일부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을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발의·제출하거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제출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하 “위원회 또는 의원”이라 한다)이 발의·제출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을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으로, “발의”를 “발의·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9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경우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조례안에”를 “경우 비용추계서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관부서”를 “주관부서(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위원회 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위원회 또는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사업 시행부서에서 작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본문 중 “작성부서”를 “작성부서(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 제3조제4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에 첨부하는 비용추계서는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제출하는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행 | 개정안 |
|---|--|
|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u>달서구청장이 발의·제출하거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제출하는</u></u> -----.</p>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비용추계서”란 <u>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제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u></p> | <p>제2조(정의) ----- -----.</p> <p>1. ----- <u>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하 “위원회 또는 의원”이라 한다)이 발의·제출하는</u> ----- ----- ----- -----.</p> |
| <p>2. 3. (생략)</p> <p>제3조(작성대상) ① <u>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u></p> | <p>2. 3. (현행과 같음)</p> <p>제3조(작성대상) ① <u>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u>----- ----- <u>발의·제출</u>----- -----</p> |

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비
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
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
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별지 서
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조
례안에 첨부할 수 있다.

⑤ (생략)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
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
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세입
및 세출 업무담당부서와 사전협
의를 거쳐 작성하고 대구광역시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경우 비용추계
서를 -----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 주관부서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제출
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위원
회 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위
원회 또는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사업 시행부서에서 작성한
다)---.

② 제3조제4항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에 첨부하는 비용추계서
는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제
출하는 예에 따른다.

③ ----- 작성부서(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제출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달서구 조례·규칙심의회 회의
에 부칠 때 조례안에 비용추계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
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
의에 부칠 때 첨부할 수 있다.

----- . <단서 삭
제>

□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1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전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그 발급을 신청할 때 제7조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에 필요한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 주민조례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개정

· 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 라 한다)

2. 조례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 이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표자가 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고, 정보시스템에 제7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 방법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취소 방법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